**에어로졸 화장품에 대한 화장품의 적정 포장 규칙 제1조 제1항의 운용에 대해**

**처음에**

에어로졸 화장품에 있어서, 에어로졸 캔에 장착하는 액추에이터(actuator, 캡을 포함한다)는 에어로졸 기능을 구성하는 기구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, 일반 소비자는 이것에 대해 내용물을 넣는 용기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. 이 때문에, 액추에이터가 에어로졸 캔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액추에이터를 제외한 에어로졸 캔을 에어로졸 화장품의 용기로 간주하여 외용적을 산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운용세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|  |
| --- |
| 에어로졸 화장품의 외용적 산정방법은 에어로졸 캔의 외용적과 액추에이터(캡을 포함한다)의 외용적을 합산하여 산출한다. 다만, 일반소비자가 상품의 외형으로 액추에이터를 내용물 용기로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에어로졸 캔의 외용적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. |